

# 2020년도 제19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9. 7.(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전문위원

2.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 제1호: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 주요내용: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장 호선

- 회의결과: 백대용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함.

####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033건(안건번호 제 2020-111407호~11145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11407호~111456호는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12080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현재 저작권침해가 문제되는 사진 등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97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성원영 전문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95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안건상정

##### ○ 제1호: 분과위원장 선출

- 성원영 전문위원: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  
견을 구함.
- A 위원: 백대용 위원을 제1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추천함.
- 참석 위원 전원: 이견 없음.
- 성원영 전문위원: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백대용 위원을 제1분과위원  
회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함.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아래와 같이 의결함)

“제1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백대용 위원을 선출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BANDAI NAMCO Entertainment', '넷플릭스', '미국 CBS', '미국 FOX', '미국 HBO', '일본 NTV', '일본 후지TV'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033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0-111407호~111456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1407호~111456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불법복제물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된 만화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111407호~11145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B 위원: 불법복제한 만화를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므로 가결 의견임.
- C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D 위원: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11407호~11145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12080호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였음.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국내 방송물 tvN '여름방학(한 회당 90분)'의 영상물 일부(각 17초, 16초 분량)와 '움짤' 2개, 스크린샷 2장, 공식 인스타그램 이미지 2장을 이용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현재상태를 제시하면서)심의일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영상물, 스크린샷 등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지 않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11208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B 위원: 경쟁 업체에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임.
- D 위원: 현재 쇼핑몰에서 문제가 되는 사진을 모두 전송 중단하였으므로 저작권 문제와는 별개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침해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현재는 게시물이 모두 삭제되어 있으므로 부결 의견임.
- A 위원: 현재 쇼핑몰에서 방송 영상물 일부, 스크린샷 등을 내린 것을 확인하였음. 부결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12080호는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111457호~112079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11457호~11207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C 위원: 안건번호 제2020-111457호~112079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A 위원: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동의함.
- B 위원: 이견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11457호~11207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

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12080호는 부결하고, 제2020-111407호~11207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19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9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9. 14.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최현용